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65호)

제 안 설 명

2021. 2.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평 남
(더불어민주당 강남구 제2선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평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께 지난 2월 5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 드리면,
「문화재 보호법」은 시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이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규칙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된 현상변경에 관한 절차를 위임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를 통해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도록 한 규정을 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 배치도 등의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하여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